

##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영 주 시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1

제출년월일 : 2003.

제출자 : 영주시장

### 1. 개정이유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분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재반사항에 대하여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있어 제4항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 제1항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규정과 중복이 되므로 제4항의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 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할 때의 규정에 있어 제목을 조문의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조건”에서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함(안 제15조)
- 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함(안·제23조)
  - ①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등에 있어, 매각대금을 10년이내 기간으로 납부하는 경우의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함(연 5퍼센트 → 연 4퍼센트)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시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환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에 있어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하는 경우에 있어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함(연 8퍼센트 → 연 6퍼센트)

-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 등에 있어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인하함(연 8퍼센트 → 연 6퍼센트)

- 라.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할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증가할 경우에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규정을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함(안 제26조제1항)
- 마.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에 있어 토석채취의 근거규정이 개정되어 “제25조제3항제1호”를 “제25조제3항”으로 변경함(안 제27조제1항)
- 바.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전세금의 관리에 있어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8조의2제4항)
- 사.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6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등 인하하고, 연체료의 부과기간 상한선을 설정함(안 제31조제1항)

- 연체요율 적용(연 15퍼센트 → 연 12퍼센트 ~ 연 15퍼센트)

- 연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 연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 연체료 부과기간 적용(60월까지 한정)

-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아. 공유재산의 신탁시 근거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문을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변경함(안 제34조의 2)

##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 조건”을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건으로 불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9. 허가조건

제23조제1항중 “잔액에 연 5퍼센트”를 “잔액에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잔액에 연 8퍼센트”를 각각 “잔액에 연 6퍼센트”로 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제1항중 “제25조제3항제1호”를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중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페센트로 하며,”를 “교환차액을”로하고, “연 15페센트의 연체료를”을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로 하며,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34조의2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적용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26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이 조례를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관리 및 처분) ① ~ ③(생 략)</p> <p><u>④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15조(사용 · 수익허가 조건)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볼여야 한다.</p> <p>1. ~ 8. (생 략)  <u>〈신설〉</u></p> <p>제2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u>잔액에 연 5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1. ~ 7. (생 략)</p> <p>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u>잔액에 연 8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3. (생 략)</p> <p>③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u>잔액에 연 8퍼센트</u>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5. (생 략)</p> <p>④. (생 략)</p>	<p>제12조(관리 및 처분) ① ~ ③(현행과 같음)</p> <p>④. &lt;삭 제&gt;</p> <p>제15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산 · 보존재산을 사용 · 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u>명시하여야 한다.</u></p> <p>1. ~ 8. (현행과 같음)</p> <p>9. 허가조건</p> <p>제23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 -----</p> <p>-----</p> <p>----- <u>잔액에 연 4퍼센트</u>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② -----</p> <p>----- <u>잔액에 연 6퍼센트</u>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p> <p>----- <u>잔액에 연 6퍼센트</u> -----</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을은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제2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 ----- ----- ----- ----- ----- -----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증가율/대부료 인상을 (생략) ② ~ ③ (생략)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5조제3항 ----- ----- ----- -----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예산의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 기간이 만료되거나 종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8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  -----  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31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u>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 15퍼센트로 하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의 연체료를 불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u>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할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34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p>	<p>제31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 -- ----- <u>교환차액을 -----</u> ----- ----- ----- -----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4조의2(신탁의 종류) 영 제102조의5----- ----- ----- ----- -----</p>

## 관련 법령(발췌)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대금납부와 완납) ①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